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족 등에 대한 특혜채용 요구 금지 등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36호)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9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개요	1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05호)	1
2.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76호)	2
II . 검토의견	4
1. 친족 등에 대한 특혜채용 요구 금지 등	4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36호)

가. 제안경위

2025년 9월 9일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

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2.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95호)

가. 제안경위

2025년 9월 16일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친족 등에 대한 특혜채용 요구 금지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4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미애의원안	김재섭의원안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생략) <u><신설></u>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u>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 ----- ----- -. 1.·2. (현행과 같음) 3. <u>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을 우선채용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u>

<신 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4. <u>임원·대주주 또는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친족임을 이유로 채용전형의 절차·기준을 왜곡하거나 다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 및 차별하는 행위</u> 제4조의4(친족채용의 공개) 구인자는 채용한 구직자가 임직원의 친족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 ----- -----5 <u>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	
--	--	--

<신 설>	②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근속자·정년 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1호 또는 제2호-----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1호 또는 제2호-----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생 략)</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③ ----- ----- ----- -----	<u>3. 제4조의2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③ ----- ----- ----- ----- <u>1. 제4조의4에 따른 친족 채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 자</u>
<u>1. ~ 3. (생 략)</u>	<u>1. ~ 3. (현행과 같음)</u>	<u>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u>④ (생 략)</u>	<u>④ (현행과 같음)</u>	<u>④ (현행과 같음)</u>

나. 검토의견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불안과 채용 비리 사건이 지속되면서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적¹⁾되었음.

1) “노조 자녀 우선채용 논란…완성차업계 실제 어떤가보니”(뉴시스, 2025.9.10.)

이에 각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세습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현행 규정으로서 법 제4조의2는 일반적 공정성 침해행위 즉,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나 채용과 관련한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각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 내 위계·관행에 기초한 특혜 채용 채용 요구·위력 행사”를 특별히 금지하여 그 처벌도 강화한 것으로서, ‘친족특혜형’ 행위를 명시적으로 요건화한 것으로 이해됨.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이를 법안별로 살펴보면, 김미애의원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김재섭의원안은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을 우선채용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위력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직접적인 요구 없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행위를 포섭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김재섭의원안의 경우 그 처벌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서, 현행법 제4조의2에 규정된 일반적 공정성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 개정안의 취지가 “조직 내 위계·관행에 기초한 특혜채용”을 특별히 금지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법정형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구분	김미애의원안	김재섭의원안
제재 행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을 우선채용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임원·대주주 또는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친족임을 이유로 채용 전형의 절차·기준을 왜곡하거나 다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 및 차별하는 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개정 사항	[거짓채용광고 처벌 강화] 5년↓징역, 2천만원↓벌금 ⇒ 5년↓징역, <u>5천만원</u> ↓벌금	[친족채용 현황 공개] 친족채용 현황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

		공개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	--	-------------------------------

아울러, 각 개정안과 같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우 장기근속자 여부를 구분하는 근무 기간이나 퇴직 사유(정년퇴직 또는 일반 퇴직) 등에 따라 법 적용 및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우선·특별채용을 ‘요구’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바,

각 개정안의 ‘친족특혜채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반적인 공정성 침해행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김재섭의원안에서 규율하는 “임원·대주주 등의 친족임을 이유로 채용 전형의 절차·기준을 왜곡하거나 다른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제한 및 차별하는 행위”는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다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 및 차별하는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규율 대상을 임원·대주주의 친족임을 이유로 행해진 부정채용 행위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김미애의원안은 거짓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형

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이는 채용 시장에서 구인자의 기만행위를 근절하여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이와 유사한 형량을 부과하는 타 법령상 행위로서 「형법」상 강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휴업기간의 해고, 취업방해 등이 규정²⁾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이거나 해고·취업방해 등 직업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거짓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가벌성과 적정한 법정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

2)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고로, 일반적인 허위 광고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다음으로, 김재섭의원안은 친족채용 현황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하는바, 채용된 자가 회사 내 모든 구성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바, 기업규모가 작아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나, 별도의 채용·인사 담당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⁴⁾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그 운영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데에 비해 「채용절차법」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사립학교법」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9